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6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강유정·양부남・박희승

박상혁 • 서영교 • 이춘석

박홍배 • 이용우 • 박용갑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 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 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최근 1주일 간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생 략)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
	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
	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 1주
	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최근 1주일
	간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